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부조직법」 개정('26. 10. 2. 시행예정)으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14. ~ 9. 21.) 예정

총리령 제 호

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대통령 직속기관, 검찰기관”을 “대통령 직속기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대통령 직속기관, 검찰기관”을 “대통령 직속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. 10. 2.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당직총사령) ① (생 락)	제30조(당직총사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공무원으로 한다. 다만, <u>대통 령 직속기관</u> , <u>검찰기관</u> 과 지리 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.	② ----- ----- -----, <u>대통 령 직속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락)	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32조(당직총사령 보좌관) ① (생 락)	제32조(당직총사령 보좌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 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 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한다. 다만, <u>대통령 직속기관</u> , <u>검찰기관</u> 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 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 서 제외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, <u>대통령 직속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